

제 1476 호
(1997) 3. 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고 건수
 편집인 : 공 보 민 유 천 수
 전 화 : 735-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권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험		
공공관리전문소요조례	3
◎ 조 례		
제2587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제2588호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제258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직중개정조례	4
제2590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 훈 령		
제 696 호 서울특별시폐시밀리통신망운용규정중개정규정	5

(이면계속)

영										
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51 호 수입배합사료성분등록	5
◎ 공 고	
제 111 호 관인재교부공고	6
제 11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6
제 11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7
제 11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7
제 115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및영업정지)	7
제 116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및영업정지	8
제 119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10
◎ 구 고 시	
제 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0
제 2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10
제 4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1
◎ 구 공 고	
제 10 호 관인재교부공고	11
제 16 호 도시계획안공고	12
제 1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2
제 1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13
제 1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13
제 1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고	13
제 41 호 관인재교부공고	14
◎ 사업소공고	
제 2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14
◎ 사 령	

공 문 시 행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환경 35210-68

(773-3764)

1990. 2.26

수신 수신처할조

제목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과에서 보유중인 아래물품에 대하여 소요여부를 조회하니 희망부서에서는 '90.3.31까지 관리전환 요청 하시기 바라며,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요청이 없을시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

- 아 래 -

물품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상 태	처분의견
3610-237	전자복사기	X-3670	대	1	2,649	불용품	폐 기
4110-004	냉 장 고	TR-4008	"	1	421	"	"
7430-001	타 자 기	SCM	"	2	185	"	"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산학전기관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2587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증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제1항의 대학원외에 도시 행정분야를 담당한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도시행정대학원”에 다음에 “과 경영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경영대학원”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88호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설치조례증정조례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청와대의 화재예방, 경계 및 진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소속아래 청와대 소방대(이하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3. 2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58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관리국장”을 “주택국장, 도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중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인이내)”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3. 2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590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7조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1인”을 “2인”으로 하고, “건설관리국장”을 “투자관리관, 도로국장”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택시일리통신망운용규정증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3. 2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④

◎서울특별시운영제098호

서울특별시책시밀리통신망 운용규정

서울특별시 책시밀리 통신망 운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①책시밀리 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한다)의 관리책임자는 설치운용 부서 실.과.동장(과제가 없는 부서에서는 계장)이 된다.

②본 통신망을 신.증설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용방법) ①본 통신망은 서울특별시, 구청, 산하기관, 대외기관 상호간 긴급문서 송, 수신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 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문서 시행부서의 책임 보안담당관 보안통제를 받아 문서통제관

의 문서통제를 거쳐 송신하여야 하며 일과시간외에는 당직사령의 통제를 받은후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 및 대외문서의 송신과 대외기관에 문서를 송신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51호

수입배합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합사료 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2.26

서울특별시장

수입배합사료성분등록내역

제조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성분량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제일곡산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4	김건외	나01-06	어류용 배합사료	해산어 초기용 양어사료 FFK-A	해산어의 치어용	54.0	10.0	1.0	1.5	3.0	13.0
			나01-07	-	해산어 초기용 양어사료 FFK-B	해산어의 치어용	55.0	10.0	1.4	1.5	3.0	13.0
			나01-08	-	해산어 초기용 양어사료 FFK-C	해산어의 치어용	55.0	10.0	2.0	1.5	4.0	17.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통규정 제9조 및 통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11호 관인재교부공고		1990. 2. 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 및 “서대문구청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년 3월 1일 2. 관인 재교부 내역	
배 기			
인 영			
공인명	성동구청장 인 (일반사무용)	성동구청장 인 (호적, 병사용)	성동구청장 인(호적 등, 초본용: 인증기용)
신 규			
인 영			
공인명	성동구청장 인 (일반사무용)	성동구청장 (호적, 병사용)	성동구청장 인(호적 등, 초본용 인증기용)
◎서울특별시공고제112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 공고		1990. 2.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5호('87.1.19), 동고시 제971호('88.12.17)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허가되어 사업시행중인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물관신축 다. 사업시행면적: 529,000㎡ 라. 건축연면적: 기존 172,811.33㎡ 금회 4,399.56㎡ 제 177,210.89㎡ 마. 사업시행기간: '87.1.19-'89.10.30 바. 사업 시행자: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옥길 사. 준공도서: 별첨(생략)	
2. 관제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13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43호('89.5.20)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되어, 사업시행중인 서대문구 신촌동 134일대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연세대학교 경영관 및 학생회관 증축
 다. 사업시행면적: 807,019㎡
 라. 건축연면적: 기존 275,534.26㎡
 금회 936㎡ 계 276,470.26㎡
 마. 사업시행기간: '87.5.20-'89.12.31
 바. 사업 시행자: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사. 준공도서: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114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847호('88.11.7) 동교시 제36호('90.2.7)로 도시계획사업(학교)

- 시행변경 허가된,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신축
 다. 사업시행면적: 529,000㎡
 라. 건축연면적: 기존 184,492.11㎡
 금회 1,068.90㎡ 계 185,561.01㎡
 바. 사업 시행자: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옥길
 사. 준공도서: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11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영업정지)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0조 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2. 19

서울특별시장

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말소 업체

입력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 정 처 분	
					사 유	유 형
1	86-99	동양주택진흥(주)	이국선	신사동339-1	실력미계출 무단전출	주축법제7조 등록말소
2	88-37	상신건설(주)	윤방섭	용암동107-12	"	"
3	85-53	범우주택건설(주)	김동규	갈현동 455-25	"	"

일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 정 처 분	
					사 유	유 형
4	84-549	대영주택	김정환 외2	죽전동 23-1	실적미제출 무단전출	주축법 제7조 등록말소
5	88-440	성나건설(주)	박광만	불광동 285-28	등록증거전 안남	"

나. 주택건설 사업자 영업정지 업체

일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 정 처 분	
					사 유	유 형
1	85-50	은광개발(주)	정 진	불광동 281-105	실적미달	주축법제7조3 영업정지3월 ('90.3.2~6.1)
2	85-51	대주건설	박정운 외3	신사동 34-2	"	"
3	84-46	오가건설(주)	정병채	용암동577-45	"	주축법제7조3 영업정지3월 ('90.3.2~6.1)
4	88-35	럭키실업산업(주)	김병호	용암동 594-36	"	"
5	85-66	(주)심원주택	김형규	구산동 2-28	"	"
6	87-117	(주)한남주택	이장희	갈현동 391-1	"	"
7	88-290	명준건설(주)	이명준	역촌동 45-23	"	"

◎서울특별시공고제116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2. 28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관련 근거 법령 조항
82-149	민택주택건설(주)	정낙현 최종민	성동구 자양동219-21	'90.3.1	무단전출 실적서 미제출	주축법제7조 2호
86-116	동산산업(주)	오선길	성동구 구의동 204-3	"	"	"
86-336	(주)진양주택	최금석	성동구 성수2가289-4	"	"	"
87-46	재흥건설	곽재훈	성동구 화양동 7-44	"	"	"
89-76	증원토건	김홍중	성동구 능동 277-1	"	"	"

○ 영입정거차 명단							
공복번호	종 류	대표자	영입소재지	영입정거 일 자	영입정거 기 간	사 유	관련근거 법령조항
84-281	대포건설(주)	권명숙	성동구 화양십리 946-15	'90.2.28	'90. 3. 1 '90. 3.31	신직기준 미 탐	주축법제7 조3
86-115	(주)지원주택	지동화 김창식	성동구 자양동 681-2	"	"	"	"
86-300	(주)이영건설	마영찬	성동구 화양동 29-22	"	"	"	"
81-38	대성주택(주)	이병환 이춘덕	성동구 구의동 252-16	"	'90. 3. 1 '90. 5.31	실적없음	"
85-29	유흥건설(주)	이규백 민영화	성동구 옥수동 244-11	"	"	"	"
86-124	덕산주택개발(주)	김병곤	성동구 자양동 220-365	"	"	"	"
87-39	한진주택건설(주)	박창식	성동구 광장동 245-11	"	"	"	"
87-40	(주)풍한기업	김대근	성동구 능동 131-6	"	"	"	"
88-89	시원산업(주)	신기호	성동구 구의동 230-6	"	"	"	"
88-90	부흥주택	신길용	성동구 구의동 246-16	"	"	"	"
88-92	지역개발(주)	이병환	성동구 구의동 252-16	"	"	"	"
83-6	제일건축(주)	이경호	성동구 구의동 252-16	"	"	"	주축법제7 조 3호
85-17	은성주택개발(주)	조남림	성동구 중곡동 92-9	"	"	실적없음및 청문불응	주축법제7 조 2,3호
88-94	오양주택(주)	이상열 강동희	성동구 자양동 680	"	"	"	"
83-6	경보주택	이광비 이창호	성동구 자양동 216-7	"	'90. 3. 1 '90. 8.31	실적서미제 출발청문불응	주축법제7 조 2호
85-250	(주)신향주택	김영연	성동구 행당동 319-36	"	'90. 3. 1 '90. 8.31	"	"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 일 자	영업정지 기 간	사 유	관련근거 법령조항
86-117	동인종합개발(주)	김주진	성동구 화양동 151-18	'90. 2.28	'90. 3. 1 '90. 8.31	실적저미지 출입차량불허	주택법제7 조 2호
87-41	남경주택건설(주)	배방근	성동구 능동 240-30	"	"	"	"
88-96	금정주택(임대)	정기택 정재욱	성동구 옥수동 262-13	"	"	"	"
89-158	대경주택산업(주)	조진호	성동구 자양동 553-501	"	"	"	"
89-168	동남아건설(주)	양해준	성동구 자양동 233-4	"	"	"	"

●서울특별시공고제119호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및
관계 도면 공람

1.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증방구정)인가 토목30510-6, 7, 9, 19, 35, 39, 41호로 공공 하수도 설치 인가되어 공공 하수도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증방구정 토목과, 하수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통합니다.

1990. 3. 2

서울특별시장

가. 공공 하수도 설치 내역 공람개요: 별첨

공 고 시

●양천구고시제2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2. 27

양 천 구 정 장

- 다 음 -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 사업 계획승인
2. 사업주체: 공군본부 제1직장주택 조합의 4개 직장주택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 위치: 양천구 신정동 295-164외 44필지
 - 면적: 8,700.56㎡
 - 규모: 아파트 15층 2동 210세대
4. 사업시행기간: '90.3. - '91.6

●구로구고시제21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위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읍 -

- 1. 사업 명 : 민영주택 건설 사업
- 2. 사업주체 : 당초-(가)거성주택 대표 이한오
변경-철도북지 주택조합 대표 권의성
서울대학교 직장주택조합(제7조합) 대표 이창재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산2-14외4필지
나. 대지면적 : 당초-5,950㎡
 변경-6,910㎡
다. 건축연면적 : 당초-11,208.84㎡
 변경-14,561.8㎡
라. 규 모 : 당초-아파트 5층 3동 120세대(전용면적 85㎡이하)
 변경-아파트5-13층 2동 133세대(전용면적 85㎡이하)
- 4. 사업시행기간 : '90.2-'91.4

1990. 2. 26

구로구청장 ㉞

㉞서초구고시제40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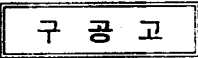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위거 민영주택건설사업제

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위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2. 26

서초구청장

- 1. 사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 자 : 서울상공회의소직장주택조합의 12개 주택조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 서초구 잠원동19-6외 84필지
나. 대지면적 : 22,496.97(6,805.3평)
다. 건축면적 : 4,875.87㎡(1,474.9평)
라. 건축연면적 : 61,818.143㎡(18,699.9평)
마. 건설규모 : 아파트, 지상15층, 7동 54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1990.2-1991.2.



㉞강남구공고제10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관인규칙제5조 및 제6조와 강남구 관인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거 개각 및 폐인된 관인을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26

강남구청장

- 1. 관인 사용 개시일 : 1990년 3월 5일 09 : 00
- 2. 승인 인 영

	신	규	폐	기
인				
공인명	압구정 제1동장의 인 및 개인		압구정 제1동장의 인 및 개인	

●증랑구공고제16호

도 시 계 획 안 공 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증랑구 도시계획안(도시계획시설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0. 2. . - 1990. . . (14일간)
 나. 공람장소 : 증랑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90-3385~6)

1990. 2.
증 랑 구 청 장

구 분	도 시 계 획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공 원	서울특별시 증랑구 증화동 310-62번지	991	어린이공원
변 경	"	"	0	해 제
신 설	공 원	서울특별시 증랑구 증화동 332-48번지	1,396중 991	어린이공원
기 정	공용의청사	서울특별시 증랑구 면목동 378-2번지	24,033	
변 경	"	"	0	폐 지
신 설	학 교	"	11,669	신 설

●성북구공고제17호

도 시 계 획 사 업 (도 로) 실 시 계 획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28호 (74. 3. 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편 장 위동 38번지 주변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자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성 북 구 청 장 ①

1) 사업시행지 : 장위동 38-6~광위동58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장위동 38번지 주변 도로포장공사
 3) 사업의규모 : 포장 폭=6m, 연장=175m
 4)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2-'9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8) 기타사항 :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공고제1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1. 서대문구고시제11호('89. 4. 22)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된 연희동 55-1 일대 서울의국인학교의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연희동 55-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서울의국인학교 교사속소 증축

- 다. 사업 시행면적: 54,800㎡
 라. 사업이 규모: 기존 4층위 1개층 증축
 연면적 399.81㎡
 마. 사업 시행자: 재단법인 서울의국인학교
 유지를재단 대표이사 고일선
 바. 사업기간: '89. 4. 22-'90. 5. 30
 사. 준공도서: 별첨(생략)

◎서대문구공고제1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1. 서대문구고시제15호('89. 5. 31), 동고시 제21호 ('89. 8. 26)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된 연희동 55-1일대 서울의국인학교의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 시행지: 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서울의국인학교 교사 증축
 다. 사업 시행면적: 54,800㎡
 라. 사업이 규모: 교사2동, 증축,
 연면적 1,219.15㎡

- 마. 사업시행자: 재단법인 서울의국인학교
 유지를재단 대표이사 고일선
 바. 사업기간: '89. 5. 31-'90. 5. 31
 사. 준공도서: 별첨(생략)

◎서대문구공고제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등 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2.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90. 2. - '90. 3. (14일간)

나. 공발개요					
사업시행자의 위치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홍은2동 9의 31-9의 32간	도시계획 사업(도로)	도로개설 B=6m L=26m	서대문구청장	인가일로부터 '90. 12. 30	서고시제396호 ('89. 8. 18) 서대문고시제27호 ('89. 10. 20)
충정로동 74-102의2	"	도로개설 B=12m L=120m	"	인가일로부터 '91. 6. 30	건고시 제177호 ('62. 12. 8)

다.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라. 위치도: 별첨(생략)

●서초구공고제41호





관인 교부(재 교부) 공고

관인 사용 개시일: 1990년 3월 1일

관인 규정 제5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우 리구 양재동의 신조 개각 및 폐인된 관 인을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서 초구 관인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2. 24

서 초 구 청 장

인 영	신 규	폐 기
	 	 

공인명 양재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 전용)

사업소공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공고제2호

회계관계공무원등록및 폐기


















서울특별시 조례 제2579호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신규등록함을 통규칙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2.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사용 및 폐기일자: 1990. 3. 2

2 등록 및 폐기내역				
인 영	신		규	
				
공인명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경 리관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분 임경리관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지 출원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물 품관리관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물 품출납원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분 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운 영과분임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영 선과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동 문출납원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북 문출납원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정 수관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 분 임정수관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수입금 출 납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세입세출 의 현금출납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동대문운 동장분임세입세 출의 현금출납원
				
공인명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동대문운 동장분임세입세 출의 현금출납원

		회 가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본 임 경리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본 임 지출원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물 품 관리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물 품 출납원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본 임 물품 출납원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운 영과 본임 물품 출납원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영 선과 본임 물품 출납원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징 수관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수입금 출납 원 인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 리사업소 유가증권 취급 강 무원	
직 인 패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입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적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본임경리관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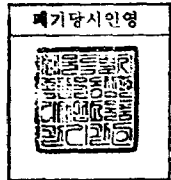
직 인 패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분임지출원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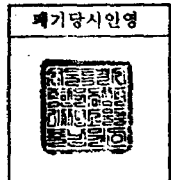
직 인 패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물품관리관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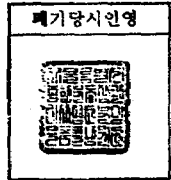
직 인 패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물품출납원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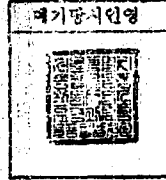
직 인 패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 반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분임물품출납원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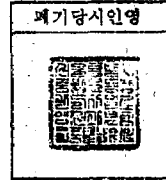
직인 폐기 신고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운영과분임물품출납원인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직인 폐기 신고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선과분임물품출납원인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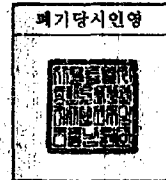
직인 폐기 신고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경수관인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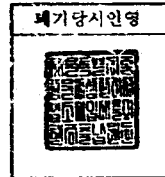
직인 폐기 신고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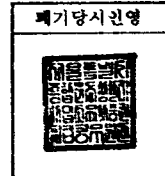
직 인 퇴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직 인 퇴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90년 3월 2일까지



사 령

©1990년 2월 26일자 5급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7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나 성 수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계장에 보함.	시설계획과	지방토목기과

©1990년 3월 10일자 6급 공무원 전입 령 제78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윤 길 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전라남도	지방행정주사

©1990년 2월 28일자 지방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 전보 령 제79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효 원	송파구	운영과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인사 발령·겸직				령 제8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이 중 순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90. 2. 26 대통령		
성복구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경 명 조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90. 2. 26 대통령		
중랑구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1990년 3월 1일자 5급 공무원 전출				령 제81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이 광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연 료 파	지방행정사무관	
◎1990년 3월 2일자 5급 공무원 겸임				령 제92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유 상 호	부너복지과 부녀행정계장에 겸임함.	부 너 복 지 과	지방행정사무관	
5급 공무원 전보				령 제83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이 규 일	내무국 (교통방송추진요원) ('90. 3. 2 - 별도지시시까지)	부 너 복 지 과	지방행정사무관	
4급 공무원 재발령(기구개편)				령 제84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이 영 재	시험제육사실관리사업소 동대문운영관	시 립 운 동 장	지방서기관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및 파견				령 제85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오 용 현	내무국 (교통방송추진요원) ('90. 3. 2 - 별도지시시까지)	중 랑 구	지방행정주사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오종일	내무국 (교통방송추진 요원) (90. 3. 2 - 별도지시시까지)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주사
권양희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송대식	교통기획과	서초구	지방행정주사르

인사 발령 통지

령 제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이 중 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0. 2. 27 대통령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성복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장 명 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0. 2. 27 대통령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중방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지적과 지적기과	김 원 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0. 2. 27 대통령
지방지적기과에 임함.	
지적과 지적관리계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도로과 전기과	최 파 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0. 2. 27 대통령
지방전기과에 임함.	
도시시설과 기전계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계획과 토목기과	이 중 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0. 2. 27 대통령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도로제약관 도로계획계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기계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지방기계기과에 임함. 운수2과 경비계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	지방기계기과에 임함. 운수2과 경비계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서울특별시 보건사과과 외곽과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설국 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설국 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중랑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중랑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국 토목과장 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중랑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과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중랑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과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포함.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상	서울특별시 상